

손해배상(기)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6가소○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손해배상(기)
원고	◇◇◇외 1	피고	□□□외 4
판결선고일	2016. 9. 6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 ◇◇◇은 ○○초등학교 재학생 중이던 2015. 12. 18. 9:45경 피고 □□□이 다리를 걸어서 함께 넘어지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, □□□은 2016. 1. 17.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서면사과 처분을 받음 - ◇◇◇의 모 ◆◆◆은, 담임교사 ○○○이 2015. 6. 3.부터 이 사건 전까지 6개월 동안 ◇◇◇이 여러 차례 걸쳐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함에도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피고 인천광역시도 학생들을 보호·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 - 피고 □□□, 그의 법정대리인 ■■■ 및 ●●●에 대해서는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, 피고 ○○○ 및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은 공동하여 원고 ◇◇◇에게 3,361,820원, 원고 ◆◆◆에게 1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. 4. 12.부터 2016. 9. 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들의 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○○○,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2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○○○,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◇◇◇에게 10,000,000원, 원고 ◆◆◆에게 2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		

판결이유

- 피고 ○○○,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폭력행위의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음